

##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

### 1. “건강권” 선택에 대하여

#### 1) 의료권으로 할 것인가, 건강권으로 할 것인가

- 의료권은 의권 혹은 진료권과 동일시하여 의사들의 진료할 권리와 혼용되고 있음
- 여성운동을 비롯하여 의료권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로 나아가고 추세
- 건강의 장(health field) 개념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에 인간의 건강수준은 보건의료제도, 환경요인, 및 인체의 생리적 조건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되며 각 요인은 다양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 건강의 장 모형은 인간 건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모든 요인들을 포괄하여 관계를 설명하며 특히 의료정책의 수단개발과 실천에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(Dever, 1991).

#### 2) 장애인 건강권 제기

-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주로 장애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, 장애로 인한 후유증상으로 건강 이상은 단순한 정신 신체적 반응으로 치부하거나, 이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다루거나 또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.

- 변화되고 있는 여성건강운동도 마찬가지로, 장애인에 있어서도 의학적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적 참여와 안녕에 초점을 맞추어 최적의 건강을 획득하는데에 장애인의 경험을 중시하여야 하며, 이에겐 생애주기별로 점검도 중요하다.

- 장애인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자기결정권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잘 이해하고, 의료제 공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협조관계를 통한 자조관리(self-care)가 가능하여야 한다.

#### 3) 건강의 개념 및 범위

-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‘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 상태에 있다.’ 라고 정의

- 건강 범위로 정의를 하는 경우에 생심리사회적 건강 측면에서는 신체적 건강(physical health), 심리적(mental) 건강, 정서적(emotional)건강, 사회적(social, 대인관계) 건강, 영적(spiritual) 건강, 사회(societal)의 건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기도 한다.

- 건강 수준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편치 앎음(dis-ease), 불건강(ill health) 혹은 최저 수준의 건강(lowest level health)의 반대로 편함(ease), 최대 건강(maximum health) 혹은 최고 수준의 건강(highest level health)을 두고 있다.

## 2. “질병” 개념 정의에 대하여

### 1) 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규정

[제정 1955.12.26 보건사회부령 제7호]

공동부령: 내무부[제50호]

제1조 세계보건기구규정 제1호에 의한 질병,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는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 국립, 공립 또는 사립의 기관의 장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병, 상해 및 사인통계를 작성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인통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, 질병과 상해통계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기술적 방법과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.

제3조 질병, 상해 및 사인의 분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.

부칙 <제7호, 1955.12.26>

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2) 위 규정 외에 질병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듯함

질병에 대해선 민간보험사 규정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바를 인용한다는 내용이 주.

#### <논의된 사항>

\* 1항의 “건강권” 정의에 재활(“장애상태의 호전”), 의료를 포함하고자 함.

\* 참고 법률의 “질병의 예방”외에 치료를 부가함 - “질병의 예방 및 치료”

\* 지역내에서 건강관리센터(예: 헬스클럽) 사용 등에 관한 것은 문화나 재화 영역에서 다룸

\* 장애를 입게 된 경우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언어치료사, 의지·보조기 기사 등을 ⑤의 “의료인”에 포함하기로 함.

\* 질병에 관한 개념 정의는 이법에서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다고 판단.

- 의료관련법률에도 질병 용어 정의가 없음.(세계보건기구 규정에 의하는 듯?)